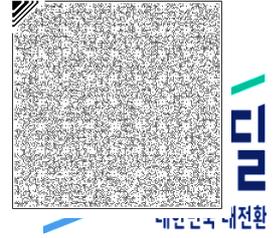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주)씨티씨바이오 등 63개사 업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타다라필 단일제(경구제)]

1. 관련 : 의약품관리과-9182호(2020.12.8.), 9714호(2020.12.22.)
2. "타다라필 단일제(경구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타다라필 단일제(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니,
4. 귀 업체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변경명령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방법에 따라 품목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품목허가(신고)증 원본 이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	
2021.2.5. ↑ 변경 일자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 변경명령 항목 기재	(의약품관리과- , 2021.1.5.) ↑ 변경명령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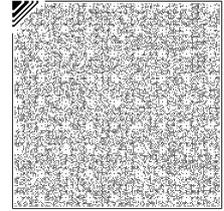
나. 품목허가(신고)증 원본에 변경 명령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보관·관리할 것

다. 변경일자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변경된 내용을 첨부 또는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당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5. 참고로, 동 기간 내에 상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지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심사관

최수진

주무관

임숙

사무관

이겨레

의약품관리과 전결 2021. 1. 5.

장 김남수

협조자

시행 의약품관리과-74

(2021. 1. 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78

팩스번호 043-719-2650

/ sujinchoi88@korea.kr

/ 비공개(5)

힘내라 대한민국!